#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행 정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101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상정 보류
제10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4. 3. 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는 1996. 11. 16.에 제정되어 1999. 10. 8. 제1차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2002. 3. 25.에 신설 또는 개정됨에 따라 상충되는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 전문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내용으로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한다로,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2개항을 신설하고,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신설하여 이사장 선출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호선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명시, 이사장후보의 절차, 사무협조의 조항과 회계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고 사업분야별로 분리하여 계리,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전 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손익금의 처리시 손실금의 처리방법, 기금 및 보조금설치 운용, 구청장의 보조금 교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차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여유금의 운영 제한, 공단의 업무상황 공표, 경영평가 매년실시, 업무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한다는 법령의 준용, 공단설립 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는 등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으로는 정관을 변경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을 경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구청장이 인가하도록 하였고, 공단의 분소사무소설치, 이사장의 임면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구청장 승인으로, 5인이내 이사를 7인 이내로 하여 이사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반영 개정하였으며, 비상임이사중 도시관리국장을 회계 연관성을 감안하여 재무국장으로, 감사의 임기2년을 그 재임기간으로, 대행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를 40일전까지로, 결산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법제 15조를 법제 24조로,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97. 12. 31.까지로 한다를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있다와 요금은 주차장 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 제1장 "총 칙"

○ 제3조(사무소)②항에서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바 ②항의 사무소는 ①항의 주된 사무소와는 다른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②항의 사무소를 분사무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자본금) "자본금"의 용어를 "수권자본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자본금"이란 사전상 용어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투하한 자금이라 되어 있고, "수권자본금"의 해석은 포괄적으로 자본금의 총액을 수권받은 범위내에서 공단설립등기전에도 설립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고, 자본금을 나누어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본금출자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5조(정관)
제①항 공단의 정관은 제1호~11호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제12호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과 제13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바 이는 지방공기업법 규정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②항에서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 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고 신설하였는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지침(2001.5.24)의 조직 및 인력관리 기준에 의하면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상임이사를 두지 못하게 규정하였는바,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이 50인 전후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 추후 정관이 개정되고 정원이 50인 이상이 될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8조(이사장) 이사장에 대하여 현행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되었고, 또한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2인이상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조에서 연임 및 연임의 제한 여부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타구의 사례(송파)를 보면 이사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연임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9조(이사) ①항의 이사의 임면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고 3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8조(이사장) 조항과 마찬가지로 연임 및 연임의 제한여부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②항 단서조항으로 비상임이사 2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제7조 ②항에서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상임이사를 두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경우 상임이사를 못두게 되는 경우 비상임 이사는 2명이 아닌 3명이 될것이므로 단서조항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2인 이라고 정하지 말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제10조(감사) 현행 조례에는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임면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던 조항을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구청장이 감사에 관한 직접적인 통제로 공단관리감독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 제17조~제23조까지는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추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한 이사장 추천을 위한 신설조항으로 별도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 제4장 "사 업"

○ 제24조(사업)에서는 공단의 사업범위가 종전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 확대되었으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삭제되었습니다.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타구의 사례(송파)를 보면 구청장은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제5장 "재무회계"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항에서 종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 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하던 것을 사업 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공단의 자율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②항 내지 ④항을 신설하여 예산성립시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제28조와 관련하여 타구의 사례(동작)를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2조(결손금의 처리)는 제31조(손익금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2조③항의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31조로 (손익금의 처리)에 위③항을 신설하고 제32조는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3조(기금 및 보조금등)②항에서 기금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한 구청의 보조금 교부 및 장기대부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제34조(차입)에서 공단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 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예산내의 지출인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는 구청에 필요자금을 조기배정 요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의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제6장 "감 독"

○ 제36조(감독) ①항은 현행조례와 같고 ②항의 1호~6호까지의 사항중 추가 또는 삭제하여 조정되었으나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이나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부분은 조정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37조(보고 및 검사)에서 ②항을 신설하여 공단이사장이 분기별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구청장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으나 현행 제26조의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 제도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제37조(업무상황의 공표) 및 제38조(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의 공표 및 경영평가제도를 신설 도입함에 따라 조정,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본 감독장에서 타구와 같이(강남, 용산, 양천)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단에 대하여 구의회에서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여겨집니다.

□ 제7장 " 보 칙"

○ 제40조(권한의 위탁)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줌으로써 공단의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에서 ②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 뿐만 아니라 무상대부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42조(공무원의 파견겸임)①항에서 공단정원의 10분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검토의견으로 최초 설립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는 다소 인원이 필요하나 그 이후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원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을 파견 또는 겸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제43조(법령의 준용)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여 본 조례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였고,
○ 제44조(시행규칙)에서 본 조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칙에서는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를 신설하여 "공단설립 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 제3조 최초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단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1) 본 조례는 1996.11.16에 제정되어 1999.10.8 1차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2002.3.25에 신설 또는 개정됨에 따라 상충되는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공단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골자

1) 제3조(사무소)제2항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함

2) 제7조 (임원) 제2항중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를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이사"로하고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로 단서조항 삽입
3) 제8조(이사장)제1항중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 할 수 있다"로
4) 제9조(이사)2항중 "비상임이사 중 2인"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수정하고
5) 제24조(사업)는 제2항을 신설하며 내용은"동조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등) 제2항의 내용에 "단, 제24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를 신설
7)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제2항중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8) 제31조(손익금의 처리)는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제32조(결손금의 처리)는 삭제하며
10)제33조를 제32조로, 제34조를 33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11)제37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를 신설하며 내용은"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1항의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의 안 번 호 | 관련 78호 |
|---|---|

제안년월일 : 2004. 3. 3.
제 안 자 : 고현순위원외

## 1. 수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3차에 걸친 개정과 특히, 2차에 걸친 대폭적 개정이 있었음에도 본 조례는 그에 따른 개정을 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보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1) 제3조(사무소)제2항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함.
2) 제7조 (임원) 제2항중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를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이사"로하고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로 단서조항 삽입.
3) 제8조(이사장)제1항중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연임 할 수 있다"로
4) 제9조(이사)2항중 "비상임이사 중 2인"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수정하고,
5) 제24조(사업)는 제2항을 신설하며 내용은"동조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제2항의 내용에 "단, 제24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를 신설.
7)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제2항중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로 수정.
8) 제31조(손익금의 처리)는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제32조(결손금의 처리)는 삭제하며,
10) 제33조를 제32조로, 제34조를 33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11) 제37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를 신설하며 내용은"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1항의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2항중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제7조2항중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를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 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1항중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제9조2항중 단, 비상임이사중 2인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제24조2항의 내용에 동조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25조2항의 내용에 단, 제24조제1항1호 및 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신설)

제28조2항중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31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내용은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32조는 제31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33조를 32조로, 제 34조를 제33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변경

제37조를 신설하며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1항을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로 수정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주차, 교통시설물 등,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 및 시설 | 제1조(목적) 생략 |
| 제2조(법인격) (생략) | 제2조(법인격) (현행과 같음) | 제2조(법인격) 생략 |
| 제3조(사무소) ① (생략)<br>②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br>②-----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br>②-----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자본금) ①--수권자본금은-----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br>②-----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 제4조(자본금) 생략 |
|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br>1 ~ 2 (생략)<br>3. 사무소의 소재지<br>4 ~ 11 (생략)<br>〈신 설〉<br>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정관) ①----------<br>1 ~ 2 (현행과 같음)<br>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br>4 ~ 11 (현행과 같음)<br>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br>13. 기타 필요한 사항<br>----------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정관) 생략 |
| 제6조(등기) (생략) | 제6조(등기) (현행과 같음) | 제6조(등기) 생략 |
|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2장 임원 및 직원 | |
| 제7조(임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 제7조(임원) ①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신 설〉 | ②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 〈신 설〉 | ③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생략 |
|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되-------- | **제8조(이사장)** 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
|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생략 |
| **제9조(이사)** ①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신설〉 | **제9조(이사)** ①----------임면하고 ---------- --------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이사)** ①생략 |
| ②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 중 영등포구의 행정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생략 |
| 〈단서신설〉 | 단, 비상임이사중 2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단,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전문가로---------- |
| |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 | 1. (생 략) |
| |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 2. (생 략) |
| ③(생략) | ③(현행과 같음) | ③(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0조(감사) ①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br>② (생략) |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br>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감사) 생략 |
| 제11조(임원및직원의 결격사유)<b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br>1. (생략)<br>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br>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br>4. (생략)<br>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br>〈신 설〉<br><br><br><br>〈신 설〉 | 제11조(임원 및직원의 결격사유)<br>①----------<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파산자로서 ----------<br>---------<br>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br>4. (현행과 같음)<br>5. ----------<br>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br>---------<br>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br>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1조(임원 및직원의 결격사유)<br>생략 |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br>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br>〈단서신설〉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br>----------<br>----------<br>----------<br>----------<br>----------<br>----------<br>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br>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br>② ~ ④ (생략) | 제13조(이사회) ①----------심의·의결----------<br>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이사회) 생략 |
| 〈신 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생략 |
| 〈신 설〉 |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생략 |
|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br>-임면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생략 |
| 〈신 설〉 |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br>제17조(설치)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br>②위원회는 영등포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br>제17조(설치) 생략 |
| |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 제18조(구성) 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 | 1. 경영전문가<br>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br>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br>4. 공인회계사<br>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br>③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br>④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
| | 제19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19조(위원장) 생략 |
| |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br>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br>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의원 |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생략 |
| |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br>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의 부서장이 된다. | 제21조(회의) 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 |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신 설〉 | 제22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br>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br>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br>⑤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22조(이사장후보의 추천) 생략 |
| | 제23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사무협조) 생략 |
| 제 3 장 사 업 | 제 4 장 사 업 | 제 4 장 사 업 |
| 제1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br>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 제24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br>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 제24조(사업) 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br>3. 공영주차장 건설사업<br><br>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 2. ---------- 견인 및 보관소운영사업<br>3.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br>4. ----------<br>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 ②동조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
| 제16조(대행사업)<br>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대행사업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br>〈신 설〉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등)<br>①----------<br>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br><br>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등)<br>①~③항 생략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 단, 24조 1항 1호 및 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br>(신설) |
| 제 4 장 재무회계<br>제1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의한다.<br>제20조(계리원칙) 공단의 사업분야 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제 5 장 재무회계<br>제26조(사업연도)-사업연도는 영등포구 ----------<br>제27조(계리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무회계<br>제26조(사업연도) 생략<br><br>제27조(계리원칙) 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 |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항 생략 |
| 〈신 설〉 |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③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생략 |
| 〈신 설〉 | ④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생략 |
| 제19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br>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제3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결산) ①---사업연도----------사업연도----2월이내----------<br>②----------영제59조---------- | 제29조(결산) 생략 |
| 〈신 설〉 | ③구청장은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21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br>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br>2. 구에서의 전입금 | 제30조(수입 및 정산) ①제24조에 의한 사업 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는 영등포구세입으로 납부한다.<br>②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br>1. 영등포구에서의 전입금<br>2. 위탁자의 사업대행비<br>3. 기타 재원<br>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30조(수입 및 정산) 생략 |
|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br>1. (생략)<br>2. 구 세입에의 납입<br>〈신 설〉<br>〈신 설〉<br>〈신 설〉<br>〈신 설〉 |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br>1. (현행과 같음)<br>〈삭제〉<br>2. 이익준비금의 적립<br>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br>4. 영등포구 세입에의 납입<br>②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br>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br>2. 적립금으로 보전<br>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 제31조(손익금의 처리) 생략<br>③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신 설><br><삭 제> |
| 제23조(결손금의 처리) ①매 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 제32조(결손금의 처리)---------- |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br>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br>----------<br>----------<br>---<br>----------<br>----------<br>----------<br>----------<br>---------- | ----------<br>----------<br>----------<br>---<br>----------<br>----------<br>----------<br>----------<br>---------- |
| 〈신 설〉 | **제33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생략 |
| 〈신 설〉 | **제34조(차입)**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br>②공단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br>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3조(차입)** 생략 |
| 〈신 설〉 |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br>1. 국채, 지방채의 취득<br>2. 금융기관에의 예입 | **제34조(여유금의 운용)** 생략 |
| **제 5 장 감 독**<br>**제24조(감독)** ① ~ ② (생략) | **제 6 장 감 독**<br>**제36조(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 **제 6 장 감 독**<br>**제35조(감독)**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1. 기구 ---------- | |
| 2. 인사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
| 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삭제〉 | |
| 4.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 〈삭제〉 | |
| 5.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 |
|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 |
| 제25조(보고 및 검사) (생략) |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현행과 같음) | 제36조(보고 및 검사) 생략 |
| 〈신 설〉 | ②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26조(고문공인회계사)①공단은 제25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 | 제37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
| ②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삭제〉 |
| 〈신 설〉 |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생략 |
| 〈신 설〉 | 제39조(경영평가)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9조(경영평가) 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br>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br>2. 경영평가 전문기관<br>3. 회계법인<br>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
| 제 7 장 보 칙 | 제 7 장 보 칙 | |
| 〈신 설〉 | 제40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0조(권한의 위탁) 생략 |
| 제27조(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br>②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생략 |
|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 〈신 설〉 | ②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생략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신 설〉 | ③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 |
| 제29조(비용부담) (생략) | 제43조(비용부담 등) ①(현행과 같음) | 제43조(비용부담 등) 생략 |
| 제30조(요금)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관련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br>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br>2. 불법주·정차차량의 견인사업 :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 〈삭제〉 | 〈삭제〉 |
| 〈신 설〉 |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 제44조(법령의 준용) 생략 |
|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5조(시행규칙)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5조(시행규칙) 생략 |
| 부 칙 | 부 칙 | 부 칙 |
| ①(시행일) (생략) |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 제1조(시행일) 생략 |
| 〈신 설〉 |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 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 |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생략 |
|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97.12.31까지로 한다. |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사업연도는----------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
| ③(예산에 대한 경과조치)<br>1 ~ 2 (생략) | 제4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br>1 ~ 2 (현행과 같음) | 제4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78 |
|---|---|

재출년월일 : 2003. 11. 21.
재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3차에 걸친 개정과 특히, 2차에 걸친 대폭적 개정이 있었음에도 본 조례는 그에 따른 개정을 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보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1) 제1조(목적)중 "주차, 교통시설물 등,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사업 및 시설"로 함
2) 제3조(사무소)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함
3) 제4조(자본금)제1항중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하고,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를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로 하며, 제2항의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을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으로 함
4) 제5조(정관)제1항제3호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하고, 제1항제12호에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1항제13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2항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로 함
5) 제7조(임원)중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에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신설
6) 제8조(이사장)제1항중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을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으로 하며, 제2항의 "통리한다"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함.
7) 제9조(이사)1항중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중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區)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를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중 영등포구의 행정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단, 비상임이사중 2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 세무, 및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라는 단서를 신설
8) 제10조(감사)1항중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함.

9)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제1항제2호중 "파산의 선고를 받고"를 "파산자로서"로 하고, 제1항제3호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로 하며, 제1항제5호중 "벌금형을 받고"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로 하고, 제2항에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를 신설하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를 신설

10)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중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

11) 제13조(이사회)1항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함

12)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에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설

13)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에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를 신설

14) 제17조(설치)에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영등포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를 신설

15) 제18조(구성)에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를 신설

16) 제19조(위원장)에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를 신설

17)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을 신설

18) 제21조(회의)에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의 부서장이 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를 신설

19) 제22조(이사장후보의 추천)에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 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를 신설

20) 제23조(사무협조)에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

21) 제24조(사업)제1호중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견인사업"을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으로 하며, 제3호중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으로 하고, 제4호의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은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함

22)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제1항중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대행사업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로 하고, 제2항에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으로 함

23) 제26조(사업연도)중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연도는 영등포구"로 함

24) 제27조(계리원칙)중 "공단의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를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로 함

25)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제2항에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에는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4항에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

26) 제29조(결산)제1항중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3월이내"를 "2월이내"로 하며, 제2항중 "영 제34조"를 "영 제59조"로 하고, 제3항에 "구청장은 결산서가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

27) 제30조(수입)중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를 "제24조에 의한 사업 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는 영등포구 세입으로 납부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제2항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영등포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비
3. 기타 재원"을 신설하고,
제3항에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를 신설

28) 제31조(손익금의 처리)제1항중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를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항제2호에 "이익준비금의 적립"을 신설하며, 제1항제3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을 신설하고, 제1항제4호에 "영등포구 세입에의 납입"을 신설하며, 제2항에 "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를 신설

29) 제33조(기금 및 보조금 등)에 "①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를 신설

30) 제34조(차입)에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를 신설

31) 제35조(여유금의 운영)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을 신설

32) 제36조(감독)제2항제1호중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항제2호의 "인사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함

33) 현행 제24조제2항중 "3.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4.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5.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

34) 제37조(보고 및 검사)제2항에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

35) 현행 제26조중 "①공단은 제25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

36)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에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신설

37) 제39조(경영평가)에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신설

38) 제40조(권한의 위탁)에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

39)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중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함

40)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제1항중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에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3항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를 신설

41) 현행 제30조중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 불법주·정차차량의 견인사업 :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관한조례"를 삭제

42) 제44조(법령의 준용)에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를 신설

43) 제45조(시행규칙)중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함

44) 부칙제2조에 "공단설립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를 신설

45) 부칙제3조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97. 12. 31까지로 한다"를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자본금 출자 5억원
다) 입법예고(2003. 6. 13. ~ 6. 26.) 결과 : 의견 있음(14건)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②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중 영등포구의 행정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비상임이사중 2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 세무, 및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 3 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7조(설치)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영등포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9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의 부서장이 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 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4 장 사 업

제24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3.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 5 장 재무회계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계리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수입 및 정산) ①제24조에 의한 사업 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는 영등포구 세입으로 납부한다.
②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영등포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비
3. 기타 재원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4. 영등포구 세입에의 납입
②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2조(결손금의 처리) ①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4조(차입)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여유금의 운영)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 제 6 장 감 독

제36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39조(경영평가)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제 7 장 보 칙

제40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3조(비용부담 등)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영등포구 예산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주차, 교통시설물 등,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사업 및 시설---------- ---------- ---------- |
| 제2조(법인격) (생략) | 제2조(법인격) (현행과 같음) |
| 제3조(사무소) ① (생략) | 제3조(사무소) ①(현행과 같음) |
| ②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 제4조(자본금) ①-------- 수권자본금은--- ---------- -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 ②----------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 |
|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정관) ①---------- ----------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사무소의 소재지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 11 (생략) | 4 ~ 11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
| | 13. 기타 필요한 사항 |
|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제6조(등기) (생략) | 제6조(등기) (현행과 같음) |
|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2장 임원 및 직원** |
| 제7조(임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
| <신 설> | ②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 <신 설> | ③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br>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br>②----------<br>-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제9조(이사)** ①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신설〉<br>②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단서신설〉 | **제9조(이사)** ①---------- ---------- 임면하고 ---- ---------- ---------- ---------- ----------<br>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중 영등포구의 행정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br>단, 비상임이사중 2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br>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br>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0조(감사)** ①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br>② (생략) |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br>② (현행과 같음) |
|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br>1. (생략)<br>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br>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br>4. (생략)<br>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br>----------<br>1. (현행과 같음)<br>2. ----------<br>파산자로서 ---------<br>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br>4. (현행과 같음)<br>5. ----------<br>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br>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br>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신 설〉 | |
| 〈신 설〉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 ---------- |
| 〈단서신설〉 |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제13조(이사회) ①---------- ---------- 심의·의결-------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신 설〉 |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 ----------임면한다. |
| |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
| 〈신 설〉 | 제17조(설치)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br>②위원회는 영등포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
| 〈신 설〉 |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자 4인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자 3인으로 구성한다.<br>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br>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br>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br>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br>1. 경영전문가<br>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br>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br>4. 공인회계사<br>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③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④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 〈신 설〉 | 제19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 〈신 설〉 |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 |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 |
| 〈신 설〉 |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
|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의 부서장이 된다. |
| |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2조(이사장후보의 추천) |
| |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 |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 |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
| | 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23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 3 장 사 업 | 제 4 장 사 업 |
| 제1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br>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br>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br>3. 공영주차장 건설사업<br>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 제24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br>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br>2. ----------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br>3.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br>4. ---------- 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
| 제16조(대행사업)<br>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대행사업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br>〈신 설〉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br>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br>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 |
| 제 4 장 재무회계 | 제 5 장 재무회계 |
| 제1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br>제20조(계리원칙)공단의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제26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영등포구----------<br>제27조(계리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br>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신 설〉 |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③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신 설〉 | ④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제19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29조(결산) ①----------사업연도----------사업연도--------2월이내----------. |
| 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제3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영 제59조---------- |
| 〈신 설〉 | ③구청장은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21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30조(수입 및 정산) ①제24조에 의한 사업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는 영등포구 세입으로 납부한다. |
| 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 | |
| 2. 구에서의 전입금 | |
|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구 세입에의 납입 | 〈삭제〉 |
| 〈신 설〉 | 2. 이익준비금의 적립 |
| 〈신 설〉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
| 〈신 설〉 | 4. 영등포구 세입에의 납입 |
| 〈신 설〉 | ②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
| | 2. 적립금으로 보전 |
| |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
| 제23조(결손금의 처리) ①매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 제32조(결손금의 처리)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신 설> | 제33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4조(차입)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br>②공단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br>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br>1. 국채, 지방채의 취득<br>2. 금융기관에의 예입 |
| 제 5 장 감 독 | 제 6 장 감 독 |
| 제24조(감독) ① ~ ② (생략) | 제36조(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
|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1. 기구 ---------- |
| 2. 인사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 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 〈삭제〉 |
| 5.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
| 제25조(보고 및 검사) (생략) |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삭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6조(고문공인회계사) ①공단은 제25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br>②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신 설〉 |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매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9조(경영평가)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br>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br>2. 경영평가 전문기관<br>3. 회계법인<br>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 제 7 장 보 칙 | 제 7 장 보 칙 |
| 〈신 설〉 | 제40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제27조(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br>②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br>②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③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 제29조(비용부담) (생략) | 제43조(비용부담 등) ①(현행과 같음) |
| 제30조(요금)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br>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br>2. 불법주·정차차량의 견인사업 :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 〈삭제〉 |
| 〈신 설〉 |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
|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5조(시행규칙)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부 칙 | 부 칙 |
| ①(시행일) (생략) |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 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 |
|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97 12.31까지로 한다. |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경과조치)----------사업연도는----------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 ③(예산에 대한 경과조치)<br>1 ~ 2 (생략) | 제4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br>1 ~ 2 (현행과 같음) |